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2.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01.1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01.22.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의안번호 제2554호).

2.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정함.(안 제15조)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정비함.(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11.19. ~ 2020.12. 9.)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류가 각 자치구 마다 상이하여 거주지 이동 시 분리 배출 오류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13조는 구를 양천구 개정한 것은 재활용을 대행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또한 용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함.

【표 1】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3조 및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을 대행하는 구 소재 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을 대행하는 양천구 소재 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안 제10조 및 별표2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하며, 재활용가능 음식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삭제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임.

【표 2】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 배출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표 3】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별표 2)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p>			<p><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p>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p>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행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p>2.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채소류</td> <td>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td> </tr> <tr> <td>고추씨 등</td> </tr> <tr> <td>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td> </tr> <tr> <td rowspan="2">과일류</td> <td>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td> </tr> <tr> <td>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td> </tr> <tr> <td></td> <td></td> <td>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td> </tr> </tbody> </table>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과일류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다른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분리배출 오류로 인해 자원화 기계설비가 고장 나거나 거주지 이동 시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폐기물관리규칙 시행규칙」 별표 5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략).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생략)

3. ~ 6. (생략)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용기 규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방식에 적합하게 제작·판매·승인한 전용용기, tag(바코드) 또는 칩 부착 용기, 종량제봉투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표준 배출용기의 용량, 형태, 규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용량조정 가능

나. (생략)

3. (생략)